

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	10일	
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	대상구분		보호보상대상자와의 관계		성명		
	보호번호		생년월일		성별		
	주 소 (전화번호 : , 전자우편주소 :)						
협의자	1	보호보상대상자와의 관계		성명 (인)		생년월일	
		주 소					
	2	보호보상대상자와의 관계		성명 (인)		생년월일	
		주 소					
	3	보호보상대상자와의 관계		성명 (인)		생년월일	
		주 소					
	4	보호보상대상자와의 관계		성명 (인)		생년월일	
		주 소					
	5	보호보상대상자와의 관계		성명 (인)		생년월일	
		주 소					

본인들은 「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·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 의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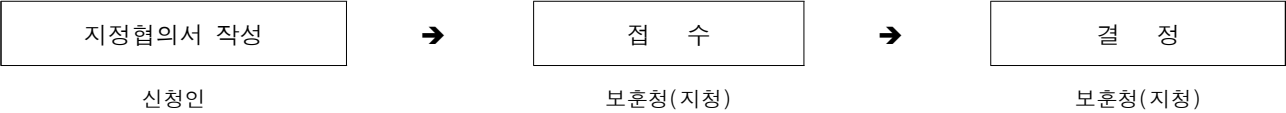
지방보호청장
보호지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협의자(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한다)의 인감증명서(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) ※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	수수료 없 음
	2. 「공증인법」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	

유의사항	1. 유족의 등록신청 순위는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. 가. 유족의 순위 ① 배우자(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)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나.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에 우선 하되,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을 우선한다. 다만,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한다. 2. 제1호나목 단서에 따른 협의에 의한 선순위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가.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등록신청서 또는 신상 변동신고서에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 나.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를,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를 첨부한다. 다. 「공증인법」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했을 경우, 인감증명서(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) 및 협의자의 날인(서명)을 생략할 수 있다.
------	---

처 리 절 차

이 지정협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확 인			
담당	주무	과장	청장(지청장)